

2020-2호

02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의정정보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최근 제·개정 법령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전국 최초 조례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2020-2 호

02



Contents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07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자원에 관한 조례
- 09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 11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 13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16 전라남도 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 조례
- 19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조례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25 창원시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촉진 조례
- 27 가평군 아름다운 나무 지정 및 관리 조례
- 30 고양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31 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39 청년일자리 정책 발전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 49 부산시의회, 이젠 브랜드가 되다, '의회로 좋네' 출범
- 50 인천시의회, 중국 우호도시에 위로와 응원 메시지 전달
- 51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 52 경기도의회, 전국최초 '3040세대 일자리 정책' 관련 연구결과 제시
- 54 충북도의회, 전국 지방의회와 진천·음성 농산물 팔아주기 손 맞잡아
- 56 제주도의회, 2월 임시회 업무보고 일정 전격 취소

최근 제·개정 법령

- 59 모자보건법
- 6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64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69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대행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등 관련질의
- 71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등 관련 등 관련 질의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2호

01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전라남도 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조례

1.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 9.] [서울특별시조례 제7472호, 2020. 1. 9.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여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의 감축에 기여하도록 서울특별시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코마일리지”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절약에 대해 마일리지 방식의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승용차마일리지”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감축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기본 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에너지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시민단체, 관련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과 자문 등을 통해 기후변화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자치구청장은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자치구가 시행하는 기후변화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에코마일리지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회원과 공동주택단지, 학교, 기업, 소상공인, 종교시설 등 사업자단체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승용차마일리지 대상차량은 시에 등록된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이며, 대상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이다. 그 외에 법인 또는 단체 소유 자동차, 렌터카, 사업용 자동차 등은 제외한다.

제5조(참여신청) ①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신청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자치구 담당부서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② 승용차마일리지의 경우 홈페이지에 의한 가입은 차량 소유자 본인만 할 수 있고 해당기관 방문을 통한 가입은 차량 소유자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탈퇴신청 등) ①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탈퇴할 수 있다.
- ② 홈페이지를 통한 승용차마일리지 탈퇴는 차량 소유자 본인만 할 수 있고 해당기관 방문을 통한 탈퇴는 차량 소유자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 ③ 승용차마일리지 가입자 중 고의 또는 중과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직권 탈퇴 처리할 수 있으며, 자진 탈퇴 및 직권 탈퇴한 경우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간 재참여신청을 제한한다.
- 제7조(에코마일리지 운영) ① 시장은 에코마일리지에 참여하는 개인과 사업자단체 회원 등에게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보와 기술을 지원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해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에너지절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장바구니,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참여자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에코마일리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참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승용차마일리지 운영) ① 시장은 차량 주행거리 감축 및 운행제한 참여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승용차마일리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③ 승용차마일리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승용차마일리지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④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자치구의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단체, 공무원 및 기관을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 1.] [부산광역시조례 제6054호, 2020. 1. 1.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존중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따른 놀이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위한 시간과 놀이 공간을 보장받으며 자유로운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진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놀이 공간 및 환경 등 기반조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 기회 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놀이 관련 전문가 및 기관·단체와의 협력방안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증진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증진계획 또는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군,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증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도시재생, 보육, 혁신도시 등 관련 부서 및 기관 연계를 통한 놀이친화 환경 조성 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아동놀이혁신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아동놀이혁신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증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아동놀이혁신위원회로 본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20. 8. 14.]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458호, 2020. 2. 14.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
2.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4조(지원 기준)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대상자(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결정자)는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적용한다.

② 장려금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세종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③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제5조(지원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신청할 때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제6조(장려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지원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장려금의 지급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수급자가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급자격의 요건 확인을 위한 질문을 거부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 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대장 관리 등)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 1. 13.] [경기도조례 제6454호, 2020. 1. 13.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으로 인하여 과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공정한 거래를 이루게 하여 지속가능한 경기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을 보전하면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등 민간의 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5.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공정관광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2. 관광·사회·건축·도시계획·환경·법률 등 관련 전문가
3. 공정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4. 공정관광 실행과 관련한 경기도민
5. 그 밖에 공정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은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경기도 공정관광 지원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정관광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 정부, 도내 시·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전라남도 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 1. 7.] [전라남도조례 제4996호, 2020. 1. 7.,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지역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플랫폼”이란 지역의 경제 및 산업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기업 기술개발사업 등을 지원하는 통합 정보 기반 서비스를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사업수행기관”이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데이터플랫폼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적용한다.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사업본부
2. 도 출자·출연기관
3. 지역기업 및 경제 관련 단체

제5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데이터플랫폼 운영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수립
2. 데이터플랫폼 이용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

3. 데이터플랫폼 홍보·마케팅 및 교육 프로그램 구축

4. 대내외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데이터플랫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데이터의 수집·관리) ① 도지사는 사업수행기관 및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 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지원 사업 및 성과

2. 지역기업의 경영현황 및 사업성과

3. 전문가 및 기술

4. 산업 및 기업 통계

5. 그 밖에 데이터플랫폼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전담기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 개발·유지) ① 전담기관은 시스템을 개발·유지 보수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데이터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데이터플랫폼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 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플랫폼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데이터플랫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라남도 데이터플랫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데이터플랫폼의 중요 사항 변경

2. 데이터플랫폼 구축에 따른 추진실적 및 분석·점검

3. 비식별화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사고 대응

4. 데이터플랫폼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제도의 개선

5. 그 밖에 데이터플랫폼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전라남도 소관부서 소속 공무원
3. 전담기관 소속 임직원
4. 도 내 경제 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의 임직원
5. 기업 혁신성장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담기관 임직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조례

[시행 2020. 1. 1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459호, 2020. 1. 13.,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지역 및 공동체 기반의 마을기업 등을 육성·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고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심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리 또는 자연부락이나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2.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사업체로써 행정안전부장관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정한 마을기업을 말한다.
3. “예비마을기업”이란 정체성 및 기업성을 갖추고 마을기업으로 발전가능성과 경쟁력이 있는 마을기업 전 예비단계의 마을단위 사업체를 말한다.
4. “제주형 마을기업”이란 제2호에 따른 마을기업 외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마을주민 주도의 마을단위 사업체를 말한다.

제3조(마을기업 등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및 제주형 마을기업(이하 “마을기업 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기업 등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마을기업 등의 창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마을기업 등의 현황과 실태 분석
4.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마을기업 등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자문 등) 도지사는 마을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마을기업 등의 사업에 관한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3. 마을기업 등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제주형 마을기업의 발굴·지정) ① 도지사는 주민의 생활상 필요를 충족하고, 지역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는 제주형 마을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을 신청할 경우 지정심사를 거쳐 제주형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주민이 대표자와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일 것

2. 마을주민이 해당 마을기업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출자자수·출자비율·특수관계인 간 출자비율을 충족할 것

3.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의 형태를 갖출 것

4. 대표자 및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 중심으로 활동할 것

5. 주민의 생활상 필요 충족·지역의 소득·일자리 창출에의 기여, 지역 기반자원의 활용, 사업계획의 적합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③ 그 밖에 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취소)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형 마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주형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도지사의 제1항에 따른 취소결정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그 밖에 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마을기업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마을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기업 등의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2. 마을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사업

3. 마을기업 등의 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전시·박람회 개최 및 참가, 마케팅 지원사업

4. 마을기업 등간의 네트워킹 지원사업

5. 선진 마을기업 등의 사례 벤치마킹 지원사업

6. 마을기업 등의 진흥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보급 지원사업

7. 마을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사업

8. 지역 유희시설을 활용한 마을기업 등의 사업 지원

9. 그 밖에 마을기업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8조(홍보 등) 도지사는 마을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을기업 등의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2. 마을기업 등의 제품·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마을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4. 그 밖에 마을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2호

02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 · 개정 조례

창원시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촉진 조례

가평군 아름다운 나무 지정 및 관리 조례

고양시 아동 ·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

1. 창원시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촉진 조례

[시행 2020. 2. 7.] [창원시조례 제1310호, 2020. 2. 7.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창원시에 거주하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하여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는 한편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중등 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기관과 「창원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고용촉진 대책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사업
3.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고등학교 졸업자의 직업탐색의 기회와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직업 탐색형 인턴 프로그램 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가평군 아름다운 나무 지정 및 관리 조례

[시행 2020. 2. 10.] [가평군조례 제2781호, 2020. 2. 10.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 문화, 학술적으로 보전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수목에 대하여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름다운 나무”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에 선정된 나무를 말한다.
2. “관리자”란 아름다운 나무를 관리하도록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시설”이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 시설로 울타리, 석축, 안내표지판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아름다운 나무 지정·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식재된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① 군수는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 문화, 학술적으로 보전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목을 아름다운나무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수 있다.

1.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
2. 전설, 설화 등을 갖고 있거나 역사·문화·학술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
3. 지역주민이나 나무의 소유자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신청한 나무

② 제1항에 따라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나무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지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관리자의 의무) ① 지정된 나무의 관리자는 자연경관 향상과 환경 보전을 위해 나무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제거·이식 및 수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고 자연고사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 군의 사업이나 시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① 군수는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수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정된 나무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2. 나무 보호시설 설치 및 병·해충 방제
3. 가지치기, 시비작업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병·충해 감염여부 및 그 밖의 생육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해제) 군수는 지정된 아름다운 나무 중 보전·보호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해제하고 해제일자 및 사유를 나무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아름다운 나무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환경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2. 가평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
3.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민간 조정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해제 심사
2.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고양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시행 2020. 2. 4.] [고양시조례 제2221호, 2020. 2. 4.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 부모가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고양시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자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제반 법률지원으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등) ①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

[시행 2020. 2. 14.] [파주시조례 제1574호, 2020. 2. 14.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을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는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마을살리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살리기”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을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고자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3. “마을협의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협의체를 말한다.
4. “사업주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마을살리기 사업에 지원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살리기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살리기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주민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함은 물론 시에 지원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는 마을협의체를 중심으로 사업의 계획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마을살리기 기본계획 등 추진방향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살리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마을살리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마을살리기의 기본계획과 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을살리기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각종 마을살리기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마을살리기 관련 교육 및 마을리더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살리기에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도시계획 등 시 관련 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과주시 마을살리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살리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사업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2. 마을살리기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살리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지원 등) ① 시장은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연수, 국내·외 사례 현장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주체로부터 전문가의 도움 요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마을살리기 위원회

제7조(설치 및 기능) 마을살리기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주시 마을살리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마을살리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살리기 지원에 관한 사항
3. 마을살리기 사업계획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4. 마을살리기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살리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마을살리기·환경·도시계획·문화관광 관련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학계 전문가 및 도시재생에 참여한 전문가

다.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사람

라. 그 밖에 마을살리기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마을살리기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9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마을협의체 및 마을살리기 사업 지원

제14조(마을협의체 구성 등) ① 마을살리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지원대상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살리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마련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문화·관광·예술 진흥 및 역사보전을 통한 마을사업 발굴
4. 마을살리기를 위한 학습·교육 관련 사업
5. 환경보전 및 경관개선 관련 사업
6. 마을살리기 협의체 지원 사업
7.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지원신청 등)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시장이 따로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마을살리기 사업주체에 대하여 추진사항 등을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사업비의 반환) 사업비를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사업비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집행하지 아니한 때
3.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때

제5장 보칙

제19조(수당 등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시장은 마을살리기 추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과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2호

03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청년일자리 정책 발전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청년일자리 정책 발전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19. 1. 17.(금), 14:00~16:10/ 예산문화원 강당〉



I 총평

(지정근 의원)

- 본 토론회는 도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일자리 정책 발전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준비된 의정토론회로
 - 청년 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할지 논의하였으며,
 -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해외 사례, 현행 정책 분석과 더불어 도내 청년들의 의견까지 더해진 지속가능한 정책 개발을 기대함.
- ⇒ 토론회의 주요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여 도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향후 계획과 추진상황을 지속적 관리하고자 함.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

<김기흥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청년 실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음. 이후 2003년 청년실업종합대책,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정, 2009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정, 2013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설립, 2020년 청년기본법 국회 통과 등 청년과 관련된 정책이 꾸준히 시행되고 있음.
- 이렇듯 청년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농촌의 입장에서 청년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 농촌의 청년 인구 감소는 당연하게도 농촌 전체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직결되며, 이는 공동체 유지와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함.
- 먼저 농촌의 청년은 크게 두 분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부모의 농업 기반을 물려받은 후계농업인과 아무 기반 없이 농사를 시작하는 귀농인으로 나눌 수 있음.
-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같은 청년이어도 후계농업인과 귀농인은 종사하는 형태가 다르며, 그에 따라 다른 지원 정책이 필요함.
- 비슷한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지역의 자원 보전 및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노력을 통해 사람 중심의 연계 선순환이 되도록 정책 추진 중.
- 우리 농촌 지역의 청년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첫째, 지역 차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당위성. 둘째,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성. 셋째, 농업, 농촌, 복지까지 확장된 역할을 할 수 있는 확장성.
- 청년 정책은 지역이 가진 고유 자원과 가치를 재인식하고 청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며, 체계, 기반, 제도 정비를 통해 새로운 청년들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계획적으로 해야 할 것임.

2 지정토론 (4인)

① 김영준 (주)행복한여행나눔 대표

-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지만,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정책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음.
- 카카오톡, SNS 등 청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매체를 통한 홍보 필요.
- 청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는 업무 시간, 비전, 전공, 복지 등 다양한 것들을 동시에 고려함. 단순히 돈만 준다고 일하러 가지 않음.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필요한 일자리 정책으로는 주거비, 교통비, 네트 워크 활동 지원이 필요함.
-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아닌 지역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필요.

② 신소희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연구원)

- 최근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하지만 여전히 대도시 위주로 하던 곳만 하고, 되는 곳만 되는 실정.
- 청년과 지역사회를 이어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필요.
- 일본 교토를 예로 들면, 마을의 역사 교육부터 시작해서 구성원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에 정착을 돕도록 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비슷한 정책으로 서울, 춘천, 옥천 등에서 ‘별의별 이주, 삶의 경로 탐색 프로젝트’ 를 시행한 적이 있음.
- 단순 재정 지원만이 아닌 그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청년이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함.

③ 강석주 (충청남도 청년정책과장)

- 충남의 청년 고용지표는 2017년 이후 점차 개선되다가 최근 악화.
- 2019년 1/4분기 기준 청년 고용률은 48.2%로 전국 1위 달성.
- 2017년 청년일자리팀 신설, 2019년 청년정책팀 배치, 2020년 청년정책과를 신설 하면서 청년 정책 추진 전담부서 신설 및 기능 강화.
- 2019년까지 112개 사업 311억을 투입하여 1,762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020년에는 71개 사업 361억을 투입하여 1,606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계획 중.
- 2020년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인재 양성, 기업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고용 창출 지원, 지역 정착 청년일자리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청년일자리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운영 사업 등을 추진 예정.

④ 강선구 (예산군의회 의원)

- 최근 청년들은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희망이 없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음.
- 이런 상황과 맞물려 지금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는 ‘올로(You Only Live Once) 라이프’ 가 유행하고 있음.
- 또한, 최근 청년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함. 개개인의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연적인 순환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미국의 실리콘 벨리는 사업이 망해도 최대 세 번까지 대출을 해주는 제도를 운영해 지금의 명성을 가질 수 있었음.
- 이제 과거 고성장의 시대가 끝났다면, 지금까지 쌓았던 부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함.
- 그리고 기성세대와 청년 간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제대로 된 청년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임.

⑤ 정민철 (젊은협업농장 상임이사)

- 제가 살고 있는 홍성에는 3개의 읍과 8개의 면이 있는데 3개 읍에 전체 인구의 70%가 살고 있고, 학생의 80~90%는 읍에 있음.
- 홍동면의 경우 현재 인구가 3,000명 이하로 떨어졌는데, 마을에서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 마을의 인구가 3,000명 이하로 떨어지면 기반 시설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함.
- 청년 문제는 마을의 생존과도 직결된 심각한 문제임.
- 20~25년 전에는 잘 나가던 농촌이 있었지만, 지금의 농촌은 다 힘들.
- 인구의 연속적 유입은 자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음. 과거 농촌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했는데, 당시 젊은 사람들이 안 떠나게 고민했던 마을만 그나마 성과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음.
- 청년들은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 짓지 않음. 서울과 지방으로 구분함.
- 그렇다면 우리는 농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 받아줄 준비가 되었는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함.
- 서울시는 ‘체류형 귀농지원’ 이라는 사업을 통해 시에서 돈을 지원해주면서 까지 지방으로 보내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 그렇다면 충청남도는 이렇게 농촌으로 가려고 하는 청년들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았는지 의문임.
- 마을의 유지를 위해 청년들을 어떻게 유입시킬 수 있을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임.
- 더불어 청년들과 연결고리,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⑥ 김면중 (예산군 청년농업인협의회 부회장)

- 최근 다른 농업인과 얘기하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음.
- 농법, 노하우, 작물 등 다른 것들은 열정과 포부로 해결할 수 있지만, 가격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 저의 경우 하우스별 목표량의 110% 달성했고 매출 대비 순이익이 62% 임에도 불구하고 농한기와 내년 농사 기초 자금을 쓰고 나면 적자로 바뀌는 상황임.
- 이런 상황에서 오프라인으로 농작물을 판매하면 경매가보다 약 2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판로가 마땅치 않은 상황임.
- 작년 로컬푸드 매장에 신청을 해서 담당자와 상담을 해봤는데, 매장에서는 농작물이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함. 이유는 누가 봐도 뻔하다고 생각함. 마트가 생활 반경에 있지 않고, 그 지역 작물은 대부분 비슷해 수요가 생길 수가 없음.
-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농작물을 다른 도시나 관광지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로가 생긴다면 지역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3 청중토론

- 민관뿐만 아니라 청년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함.
- 충남에 맞는 충남 특화 청년 일자리 정책이 필요할 때. 특히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농업정책과에서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 현장과는 괴리가 있다는 생각을 오늘 많이 했음.
- 그 간극을 줄이고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의견 : 김윤호 /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과장]

- 연초라 여러 일정으로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분들과 내외빈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오늘 토론회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는 실무자뿐만 아니라, 실제 청년들의 생생한 경험까지 들을 수 있었던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저 또한 모르는 단어들을 많이 알았고, 실제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음.
- 최근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음.
- 오늘 나왔던 다양한 의견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확인하도록 할 것임.

[마무리 발언 : 방한일 / 충청남도의회 의원]

III 토론회 결과

-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정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토론자로 참여한 청년들의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서 기성세대와 청년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알아가며,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논의함.
- 최근의 청년 세대는 개개인의 개성이 다르고 독특해서 일정한 기준으로 구분 짓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특히, 최근 지역 사회의 인구 유출 문제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전 패널이 의견을 같이 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도 청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IV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충청남도(청년정책과)
 -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2호

04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부산시의회, 이젠 브랜드가 되다, '의회로 좋네' 출범

인천시의회, 중국 우호도시에 위로와 응원 메시지 전달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전국최초 '3040세대 일자리 정책' 관련 연구결과 제시

충북도의회, 전국 지방의회와 진천·음성 농산물 팔아주기 손 맞잡아

제주도의회, 2월 임시회 업무보고 일정 전격 취소

부산광역시의회

‘부산시의회’ 이젠 브랜드가 되다! ‘부산시의회, 의회로 좋네’ 출범

- 1.31~2.28간 부산시의회 통합브랜드 론칭 이벤트 진행(페이스북, 유튜브 등) -

부산광역시의회는 현재 운영 중인 시의회 공식 SNS 5종 미디어의 통합브랜드 명칭을 ‘부산시의회, 의회로 좋네’로 정하고, 오는 31일부터 브랜드 통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의회 SNS 미디어 통합브랜드 ‘부산시의회 의회로 좋네’는 현재 운영 중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공식 SNS 5종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명칭으로 부산시의회가 생각보다 시민 삶에 가까이 있고, 알면 알수록 더욱 좋고, 친근하게 느껴질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의회 SNS는 짧은 운영 기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회를 대표하는 소통 채널로 크게 성장해왔다. 특히, 제8대 시의회 개원 후 30배 이상 구독자가 증가(‘18.7월 486명 → ‘20.1월 14,908명)하였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채널을 확장하는 등의 성과는 그간 의정활동 제1의 핵심가치를 ‘시민소통’에 두고, ‘권위를 내려놓는 의회,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통합브랜드 출범으로 앞으로 시의회의 대내외 인지도는 높이고, 다양한 콘텐츠로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시민과의 문턱은 낮추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SNS 통합브랜드 출범을 기념해 1.31부터 2.28까지 한달간 이벤트를 진행한다. 부산시의회 공식 SNS 5종 채널에 각각 구독 및 팔로우 후 댓글을 달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중국 우호도시에 위로와 응원 메시지 전달

중국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누적 확진자수는 7만여명, 사망자수는 1천700여명을 넘기는 등 중국 국민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은 중국 내 우호교류를 지속하고 있는 대련시, 중경시, 천진시, 허난성 4개 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에 2월 13일 서한문을 전달했다.

서한문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국의 각 도시 시민들을 위로하고,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국 국민들과 각 도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응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천광역시의회도 중국 4개 우호도시 상무위원회와 함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하여 중국 대련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샤오성평(肖盛峰) 주임은 2월 14일 감사 서한문을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우정어린 위로와 응원의 글을 보내준 인천광역시의회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종식 후 양 도시·국가간 교류를 더욱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 올해 6월 말까지 채평석 신임 위원장 체제로 재편…신년 활동 재개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이하 행정수도완성 특위)’는 22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채평석 의원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9일 윤형권 행정수도완성 특위 위원장의의원직 사퇴로 신임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열렸다. 그 결과 행정수도완성 특위는 시민사회와 공조를 통한 원활한 계획 추진을 위해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공동 대표를 역임했던 채평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수도완성 특위는 채평석 신임 위원장과 박용희 부위원장, 박성수·손인수·손현옥·임채성 위원 등 총 6명으로 재편되었으며, 올해 6월 말까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채평석 위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동료 위원들과 함께 세종시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위, 전국최초로 ‘3040세대 일자리 정책’ 관련 연구 결과 제시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위원장 원미정)는 4개월(2019.9~2020.1)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최근 일자리 감소폭이 심각한 3040세대의 일자리정책의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현재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는 다양한 일자리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책은 주로 청년과 중장년 및 고령자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처음으로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3040세대의 일자리 지원에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우선 경기도는 고용상황이 지역별로 각각 달라 지역별 일자리 수급 현황에 따른 미스매칭이 심각하다고 분석되었다. 따라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특히 안산시와 화성시의 일자리 미스매칭과 일자리 수급불균형이 심각하여 긴급한 지원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일자리정책의 시사점으로 4차산업혁명과 산업구조의 재개편에 따른 신산업 분야의 교육훈련 부분에 대한 서비스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정책으로는 단순 일자리공급만 늘리는 것보다 노동시장 진입 전에 다양한 정보제공과 교육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기존 일자리정책들이 공급자 중심으로 추진되어 수요자의 니즈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경기도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일자리정보제공 프로그램에 대해 수요자 입장의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다는 점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원미정 위원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는 일자리창출 역량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우수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따라서 3040세대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한다면 상당한 성과가 나오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특히 일자리수급불균형이 심각한 화성시, 안산시 지역의 3040세대 니즈를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정책 및 일자리 정보제공 서비스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는 2019년 6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업무보고, 도 일자리 대책본부와의 간담회, 일자리현장방문, 정책연구를 통해 경기도 일자리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번 용역결과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3040세대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 및 예산확보를 위해 일자리대책본부와 지속적인 협력과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전국 지방의회와 진천·음성 농산물 팔아주기에 손 맞잡아

- 14일부터 17개 지방의회 동시 추진, 진천·음성·이천·아산 등
- 카드뉴스 제작, 홈페이지·SNS로 특산물 온라인 홍보

충북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와 진천·음성 농산물 팔아주기에 손을 맞잡았다.

충북도의회와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중국 우한교민을 따뜻하게 맞아 준 진천·음성 지원을 위해 각 지방의회 인터넷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한 농산물 온라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충북도의회와 시도의회협의회는 ‘우리는 서로의 안전망’이라는 공동 슬로건 아래 우한교민 수용지역인 진천·음성·이천·아산 지역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카드뉴스 6장을 제작해 농산물 판매·홍보를 지원한다.

카드뉴스는 관련지역 특산물에 대한 소개와 구입처를 기재해 전국 지방의회 SNS를 통해 홍보한다. 무농약 생거진천 쌀·청정 음성 고추·유기농 아산 오이·임금님표 이천 쌀 등이다.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은 “우한교민 수용에 따른 지역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고자 캠페인을 실시한다”며 “전국 17개 시도의회 및 전국시군자치구의회 등과 힘을 모아 교민 수용 지역 농산물 판매촉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한 철수 교민 수용 지역
아산·진천·음성·이천 농산물 구매 캠페인

우리는 서로의 안전망

아산·진천·음성·이천의
주민들과
함께 합니다

**아산오이, 생거진천 쌀,
음성고추, 이천 쌀**

아산·진천·음성·이천 주민을 위해
기억해 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거진천 쌀

#무농약 #즉석밥원료

대통령상 2회 수상한 명품쌀

진천 : 진천물 (www.jcsmall.net)

음성 고추

#청정지역 #재배조건GOOD

고추 특유의 매운맛과 향기가 강한 음성청결고추

음성 : 음성장터 (www.esjang.go.kr)

아산 오이

#NO농약 #발효퇴비

유기농법 재배로 품질이
우수한 무공해 오이

아산 : 아산장터 (www.asanfarm.co.kr)

이천쌀

#임금님_진상미

품질과 밥맛이 월등한 임금님표 이천쌀

이천 : 이천농협 (031-633-7151)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제주도의의회 2월 임시회 업무보고 일정 전격 취소

- 도민 안전이 최우선, 위기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지혜 갖자 -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가 2020년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2월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 일정을 전격 취소하기로 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대응 관련 현안부서만 기존 임시회 일정과 상관없이 가능하서둘러 특별현안보고를 받고 상황 공유와 대응책을 같이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는 4일 오후 2시 의장실에서 김태석 의장을 비롯 김희현·강충룡 부의장, 김경학·고태순·박원철·고용호위원장, 김장영 미래제주 원내대표 의원, 그리고 오정훈 도의회 사무처장과 전문위원 및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대응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은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추세로 위중한 상황”이라며 “집행부에서 보다 더 집중해서 감염병 확산을 차단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는 만큼 임시회 취소까지도 검토하는 등 여러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태석 의장은 “지금 제주는 막연한 불안에 대한 공포, 외국인 혐오와 배제 등 바람직하지 못한 분위기가 없지 않다”며 “도의회는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 하고, 집행부 또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조기에 문제를 차단 할 수 있게 여러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2월 임시회 업무보고 일정을 전격 취소해 집행부가 현안 해결을 다할 수 있도록 힘 실어 주자”며 “다만 감염병 확산 방지 대책,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지역 경제 선순환 파괴, 학생안전 담보 등을 위한 관련 부서만 최소화 해서 하루정도 특별현안보고를 받는 걸로 마무리하자”고 촉구했고, 참석 상임 위원장등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2호

05



최근 제 · 개정 법령

모자보건법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 모자보건법

[시행 2020. 1. 16.] [법률 제16245호, 2020. 1. 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에서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임산부나 영유아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임산부 또는 보호자로부터 내용을 통보받아 확인하고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산후조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 있거나 의심되는 사람에게 근무제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 그리고 산후조리업자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며, 시정명령 대상과 산후조리업 정지·폐쇄 명령 요건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대상을 추가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소독 등의 환경관리,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등으로 열거하고, 실제 감염이나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임산부나 영유아가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때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임산부나 보호자로부터 확인하고 확산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함(제15조의4).
- 나. 산후조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 있거나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고,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제15조의5제2항, 제15조의5제3항 신설).
- 다. 산후조리업자와 마찬가지로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제15조의6제1항).

- 라. 시정명령 대상으로 제15조의5제2항에 따라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를 추가함(제15조의8제4호 및 같은 조 제7호 신설).
- 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질병이나 감염으로 의료기관 이송 시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및 격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산후조리업의 정지·폐쇄 요건으로 추가함(제15조의9제1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 바.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와 영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모자동실을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15조의21 신설).

2.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340호, 2020. 1. 7., 제정]

제정이유

갯벌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갯벌의 복원 및 갯벌 생태관광의 진흥 등 갯벌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276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청정갯벌의 지정기준 및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제2조)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청정갯벌의 지정·관리 및 갯벌생태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나. 갯벌관리구역의 지정(제3조)

해양보호생물의 주요 서식처이거나 안전사고 예방 또는 생물자원의 생산증대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갯벌 등을 갯벌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갯벌관리구역의 해제(제4조)

군작전의 수행이나 군사시설의 설치·보호, 인명·재산의 피해방지 및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의 시행 등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거나 갯벌생태계가 복원되어 갯벌안전관리구역 또는 갯벌휴식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등에는 갯벌관리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청정갯벌의 지정기준 및 표시(제6조 및 제9조)

청정갯벌의 지정기준을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어장구역일 것, 중금속 함유량 등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환경기준을 충족할 것 등으로 정하고, 청정갯벌에서 수산물을 생산한 자는 포장·용기 등에 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의 예외(제10조 및 제11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 등의 행위, 갯벌관리구역 관리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설치, 갯벌생태계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 조사 및 연구 활동 등을 하는 경우 갯벌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갯벌복원사업의 시행, 문화재 조사 및 보호조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갯벌안전관리구역과 갯벌휴식구역에서의 출입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

바. 갯벌복원사업 우선 실시지역(제13조)

해양보호생물의 서식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 해양 오염사고 발생 또는 유해해양생물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갯벌복원이 시급한 지역에서 갯벌복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사.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취소 등 처분 기준(제18조 및 별표 1)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교수요원 등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을 정함.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25호, 2020. 1. 7., 일부개정]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만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 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대상에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영 및 관리 실태를 포함하고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에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가입대상 시설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대상 확대(제4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대규모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의 평가 항목에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영 및 관리 실태를 포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관리 및 활용을 강화함.

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확대(제74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 활동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예외를 규정하는 한편,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민간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함.

다.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확대(별표 3 제17호)

- 1) 지금까지는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인 공동주택이 15층 이하의 아파트로 한정되어 있어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에 재난 발생 시 피해자 보상이 미흡한 문제가 있음.
- 2) 앞으로는 15층 이하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임대주택도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가입대상 시설을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해야 하는 임대주택으로 확대함.

4.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2. 19.] [법률 제17064호, 2020. 2. 18., 제정]

제정이유

휴식과 건강을 중시하는 사회적 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자연을 활용한 치유 및 휴양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해양 자원과 건강관리, 휴양 서비스가 결합된 해양치유산업을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 기후 등 다양하고 풍부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해양치유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시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등을 포함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활용실태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7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활용이 필요하거나 해양치유시설 설치와 해양치유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양치유자원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라.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자본금 등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함(제13조).

- 마. 사업시행자가 해양치유지구를 조성하려는 경우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14조).
- 바. 사업시행자는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17조).
- 사.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제조·판매·체험 등을 위한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부담금 등의 감면 등 해양치유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인력 양성 및 해양치유서비스의 보급 등을 수행하는 해양치유관리단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해양치유관리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 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치유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고,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을 수 있음(제24조).
-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제27조).
- 카. 해양치유지구 내에서 해양치유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이 있는 읍·면·동에 소재한 어업인과 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제30조).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2호

06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대행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등 관련질의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등 관련 등 관련 질의

법령상 부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령의 근거 없이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대행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등 관련)

[의견 20-0009, 2020. 2. 3., 부산광역시교육청]

【질의요지】

법령상 부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령의 근거 없이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이 사안의 경우, 법령상 부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령의 근거 없이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하 “부산광역시교육감 조례안”이라 함)은 부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대행”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제1조), 여기서 “대행”이란 부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교육감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원권한자인 교육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제2조제1호).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26조에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1조에서 교육감 권위 등의 경우에 부교육감의 권한 대행·직무대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11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산광역시교육감조례안에서 제정하려는 “대행”에 관한 규정은 보이지 않는바, 이 사안은 이와 같이 법령상 부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령의 근거 없이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업무의 대행”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목과 책임은 원(原)권한자인 행정기관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행”은 행정기관인 부산광역시교육감의 법령상 사무를 대행기관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목과 책임은 원권한자인 교육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행정업무의 대행”에 해당할 것이고, 이러한 대행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법적으로 이전하여 행정권한을 수탁 받은 공무수탁자가 그의 이름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정권 행사의 법적 효과 또한 공무수탁자에게 귀속되는 민간위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법제처 2011. 8. 1. 회신 의견 11-0150 참조).

대행의 경우 대행을 받은 자가 대외적으로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인 피대행관청의 이름과 책임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일반국민이나 주민이 대행을 하고 있는 대행기관을 행정기관으로 오인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법령에 그 근거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법제처 2013. 10. 25. 법령해석례 13-0417 참조). 또한,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법령에서 교육감이 수행하도록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교육감이 아닌 법인·단체 등이 대행하게 하려면 그 대행에 관해서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대행은 행정권한자와 그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이며 위임이나 위탁과는 달리 일반규정이 없기 때문에 피대행관청의 권한 또는 업무를 규정한 법률에 규정해야 하고, 행정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행정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라면 지정기준, 지정취소, 지정절차 등 대행과 관련된 핵심적 사항도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6. 9. 의견제시 15-0110,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2017) 475쪽 참조).

따라서, 법령상 부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령의 근거 없이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남도 아산시는 대한노인회 아산시 지회장, 지회의 읍·면·동 분회장이나 아산시에 등록된 경로당의 회장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의견 20-0012, 2020. 2. 3., 충청남도 아산시]

【질의요지】

충청남도 아산시는 대한노인회 아산시 지회장, 지회의 읍·면·동 분회장이나 아산시에 등록된 경로당의 회장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이유 참조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 아산시가 대한노인회 아산시 지회장, 지회의 읍·면·동 분회장이나 아산시에 등록된 경로당의 회장(이하 “지회장등”이라 함)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무가 아산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서 노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대한노인회법”이라 함)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대한노인회 아산시 지회 및 아산시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회장등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산시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산시가 지회장등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회장등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대한노인회법 제5조제1항,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에서는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나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 외에 지회장등의 ‘개인’에게 활동비라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는 노인 보건 및 복지증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규정만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지회장등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8. 12. 6. 의견제시 18-0258 참조).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례 참조)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정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대한노인회법 제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령에서 노인복지시설로서 경로당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한편, 지회장등의 개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원 근거를 두지 않은 점과 이와 같이 경로당 시설이나 대한노인회 단체에 대하여 아산시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별도로 지회장등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내용을 조례에 규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표지 설명

충남도의회 “혁신도시 지정 저지 TK 일부 국회의원 규탄”

충남도의회는 11일 제3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저지 대구·경북지역 일부 국회의원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통과 저지 방침을 세운 대구·경북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을 규탄하고 입장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2004년 균특법이 제정된 이래 전국 11개 광역시·도 10곳에 혁신도시가 지정돼 있으며 150여 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경제적·재정적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충남과 대전만 혁신도시로 지정받지 못하면서 충청인들에게 소외감은 물론 역차별에 따른 커다란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해 10월 100만 명이 넘는 충남도민은 모두 함께 잘 살고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혁신도시 추가 지정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작성하기도 했다.

도의회는 이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MEMO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20년 2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 ❖ 연 락 처 : (041) 635-5124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

